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079
------	------

2022. 2. 14.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1월 25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2.2.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김의승)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이 규칙을 대상으로 제정·개정·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

2. 주요내용

-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함
(안 제23조~제30조까지 신설).
 - 의견제출 방법을 규정하고, 제출 제외대상을 명시함
(안 제23조~제25조까지).
 - 의견제출 검토 및 보완요구, 결과통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26조, 제27조).
 - 의견 반영 등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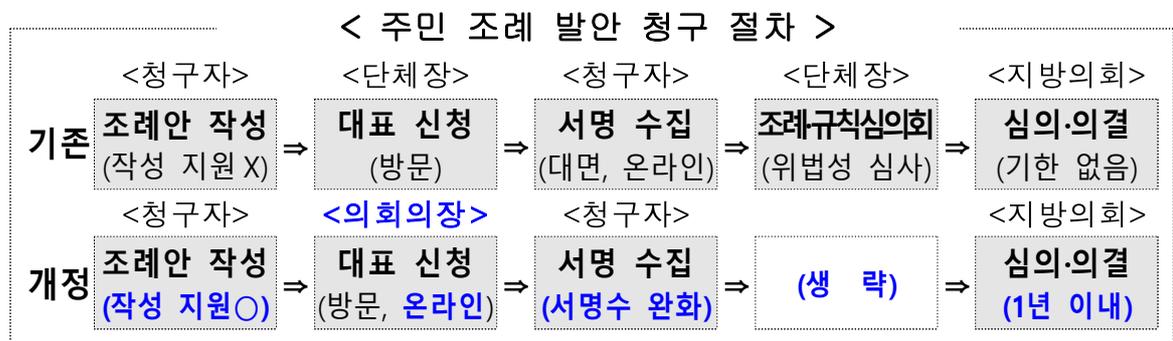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규칙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권이 신설됨에 따라 의견제출과 검토, 결과 통보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하 ‘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주민 중심의 지방행정 구현과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특히 주민주권의 구현을 위한 직접참정제도가 신설되면서 주민 직접발안제도와 규칙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권이 도입되었음.
 - 법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사항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2.1.13. 시행)로 분리 제정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음.



-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권이 신설되고 세부적인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

- 서울시는 이 중 규칙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권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안을 참고하여 별도의 제정안이 아닌 현행 조례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하게 되었음.

다.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개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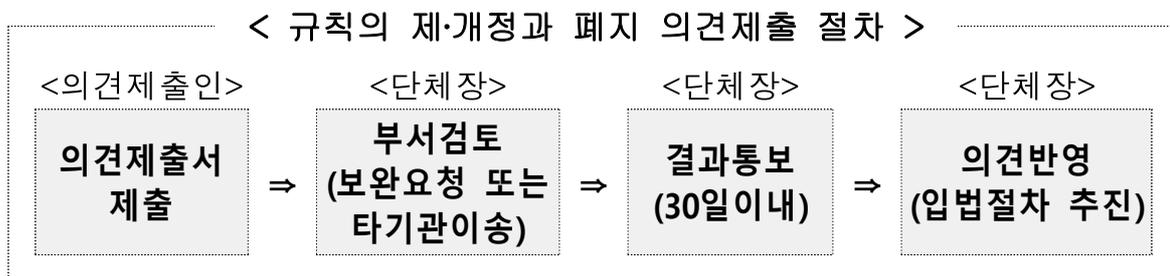
-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한 주민의 규칙 제·개정과 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 조문별 주요내용 >

조 항	조 제 목	주요내용
안 제23조	주민의 규칙 의견제출	의견제출 방법을 규정하고 제출 제외대상을 명시
안 제24조	의견제출 제외대상	
안 제25조	의견제출서 작성방법	제출서류 보완요구와 30일 내의 결과통보
안 제26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안 제27조	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	
안 제28조	의견의 반영	입법절차 추진
안 제29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	의견제출에 대한 보호조치
안 제30조	비밀 준수의 의무 등	

- 1) 「지방자치법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23조와 제25조는 주민이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취지와 이유를 의견제출서에 명확히 하여 제출하고, 다수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견서에 표시하는 등 의견제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4조는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로 하였음.
- 안 제26조는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27조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소속 위원회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인에게 검토 결과 등을 통보하도록 하였음.
- 안 제28조는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의 제·개정과 폐지의 입법절차를 추진하여 주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음.



- 그동안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규칙에 대한 의견제출 근거 규정이 미비한 문제가 있었는데, 개정안을 통해 주민주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 이와 함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2022.1.13.)되면서 주민의 직접참여와 의회의 대표성·책임성을 환기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 다만, 제출 의견에 대해서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의회의 모니터링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입법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79
----------	------

제출년월일 : 2022년 1월 2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이 규칙을 대상으로 제정·개정·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

2. 주요내용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함
(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 의견제출 방법을 규정하고, 제출 제외대상을 명시함
(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의견제출 검토 및 보완요구, 결과통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26조 및 제27조).
- 의견 반영 등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0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1. 11. 25.~12. 18.)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제23조(주민의 규칙 의견제출) ① 주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의견제출을 처리해야 한다.

제24조(의견제출 제외대상)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25조(의견제출서 작성방법) ①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②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2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 ① 시장은 의견제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견제출서의 내용과 관련된 시 소속 위원회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작성하여 의견제출인에

게 통보해야 한다.

1. 의견제출 검토내용 및 의견 반영 여부

2. 제2항에 따라 의견검토를 생략한 경우 그 생략 사유

④ 시장은 의견제출이 제24조 각 호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제외 사유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 그 밖에 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입법절차를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제2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장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u>
<u><신 설></u>	<p><u>제23조(주민의 규칙 의견제출) ①</u> <u>주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u> <u>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u> <u>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u> <u>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u> <u>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u> <u>다)하려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u> <u>는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u> <u>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u> <u>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u> <u>해야 한다.</u></p> <p><u>② 시장은 주민의 권익 보호 및</u> <u>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u> <u>의견제출을 처리해야 한다.</u></p>
<u><신 설></u>	<p><u>제24조(의견제출 제외대상) 법 제</u> <u>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u> <u>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u> <u>련되지 아니하는 사항</u> <u>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u> <u>사항</u> <u>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u> <u>범위를 벗어나는 사항</u>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제25조(의견제출서 작성방법) ① <u>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u></p> <p>② <u>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u></p>
<p><u><신설></u></p>	<p>제2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u>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u></p> <p>② <u>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u></p>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u>려야 한다.</u></p> <p><u>제27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u> <u>보) ① 시장은 의견제출 검토를</u> <u>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견</u> <u>제출서의 내용과 관련된 시 소</u> <u>속 위원회 또는 전문가의 자문</u> <u>을 받을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의견제출이 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u> <u>우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u></p> <p><u>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u> <u>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u> <u>에 해당하는 경우</u></p> <p><u>2. 의견제출 내용이 법령의 개</u> <u>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u> <u>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에</u> <u>해당하는 경우</u></p> <p><u>③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u> <u>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u> <u>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u> <u>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작</u> <u>성하여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u> <u>야 한다.</u></p> <p><u>1. 의견제출 검토내용 및 의견</u> <u>반영 여부</u></p> <p><u>2. 제2항에 따라 의견검토를 생</u></p>

현행	개정안
	<p><u>략한 경우 그 생략 사유</u></p> <p><u>④ 시장은 의견제출이 제24조 각 호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제외 사유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u></p> <p><u>⑤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u></p> <p><u>⑥ 그 밖에 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신 설></u></p>	<p><u>제2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입법절차를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u></p>
<p><u><신 설></u></p>	<p><u>제2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u></p>
<p><u><신 설></u></p>	<p><u>제3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u></p>

현행	개정안
	<u>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u>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위임한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폐지와 대한 의견제출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02-2133-6692)